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44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황정아 · 장철민 · 박정현
박용갑 · 조승래 · 허성무
이병진 · 최민희 · 황명선
손명수 · 이광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이 무차별하게 게재·유통되면서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런 허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에 업로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소위 '사이버택커'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자(死者)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 또는 정치적·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표현까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제70조의2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사자(死者)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의2를 제70조의3으로 하고,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벌칙) ①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행위가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당사자가 생전(生前)에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거나 당사자의 지명도에 비추어 당사자의 행위가 사회 구성원 다수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사후(死後)에도 역사적·사회적 평가와 연구가 지속되는 인물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를 “제70조제2항, 제70조의2제1

항, 제72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사자(死者)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u>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70조의2(벌칙) ①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u> <u>③ 제1항의 행위가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당사</u>

